

제 호

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

- 성 명 :
- 생 년 월 일 :
- 주 소 :
- 보호자 성명 :
- 장애인등록증 : 제 호(년 월 일 발급)

위 사람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장애 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기한 : . . 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※ 위의 기한까지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조치가 시행됩니다.